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12.28.(수) 행사종료시 (17:30 경, 별도공지시)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2.12.28.(수) 14:00
담당 부서 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 정상용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수연 (044-203-4381)

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 첫걸음
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·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

- 대형마트, 정부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 강화 지원
- 중소 유통업계, 대형마트 및 정부 등 상생협약 체결

□ **대형마트**와 **중소유통**은 온라인화·디지털화 등 **유통환경 변화**에 대응하여 **중소유통 업계**의 **온라인 대응역량 강화**와 **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**를 통한 **상생발전**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.

○ **전국상인연합회**, **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**, **한국체인스토어협회** 및 **국무조정실**, **산업통상자원부**, **중소벤처기업부**는 12월 28일(수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**'대·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'**(이하, 상생협약)을 체결했다.

* 참석자 :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,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,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,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,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,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

□ **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***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**2012년 도입**되었으나,

* **(유통법 제12조의2)**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·준대규모점포에 대해 **영업시간 제한**(0~10시 범위) 및 **의무휴업**(매월 이틀,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)을 명할 수 있음

○ 최근 **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**함에 따라 **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**도 지속되었다.

□ 이에 **정부**는 지난 **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**를 열어 **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**에 대해 전문가·이해단체 등의 **다양한 의견을 청취**한 바 있으며, 회의 결과,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.

○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**‘대·중소유통 상생협의회’**를 출범시키고, **관계부처** 중심으로 **대·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**면서 **논의를 진행**해왔다.

□ 오늘 체결된 **상생협약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**대형마트**등의 **영업제한시간·의무휴업일**에도 **온라인 배송이 허용***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, **의무휴업일 지정** 등과 관련해서는 **지방자치단체**(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)의 **자율성 강화**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.

*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, 영업제한시간·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불가

○ 또한, **대형마트**는 **중소유통의 역량 강화**를 위해 **디지털화** 촉진 등을 위한 **인력 및 교육을 지원**하고, **물류 체계 개선**, **판로 확대** 및 **마케팅·홍보**, **시설·장비 개선** 등을 **종합적으로 지원**할 계획이다.

○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**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**하기 위하여 협약식 이후 **정례협의체**를 구성해 **상생방안을 구체화**하는 등 **논의**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**이정원 국무2차장**은 “이번 **상생협약**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**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**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○ “상생협약을 통해 **대·중소 유통 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계기**가 되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으며, “**정부**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**업계와 지속 소통**하면서, **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**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1 : 대·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계획 / 붙임 2 : 대·중소 유통 상생협약서 전문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이아연 (044-200-2454)
		담당자	사무관 나홍환 (044-200-2916)
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 정상용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수연 (044-203-4381)
<공동>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배석희 (044-204-7820)
		담당자	사무관 이청수 (044-204-7854)
<공동>	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	책임자	과 장 김문식 (044-200-4842)
		담당자	사무관 박선욱 (044-200-4357)
<공동>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 김승태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 심정민 (044-215-453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대·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계획**

□ **협약명** : 대·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

□ **일 시** : 12.28(수) 17:00 ~ 17:10

□ **장 소** : 정부서울청사 9층 의전행사실

□ **협약자**

○ **이해단체(3)** : 전국상인연합회장,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,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

○ **정 부(3)** : 국조실 국무2차장, 산업부 1차관, 중기부 차관

□ **진행순서**

소요시간	주 요 내 용	공개 범위
02′	협약식 개회 및 참석자 소개 (사회 : 규제심판지원팀장)	공개
03′	국무2차장 모두발언	
05′	협약서 서명, 기념촬영 및 폐회	

붙임2 **대·중소 유통 상생협약서 전문**

대·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

전국상인연합회,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,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총칭하여 '각 기관'이라 한다)는 대·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대형마트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합의하고, 향후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에서 대형마트등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 정한다.

②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유통업을 대표하고,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등을 대표한다.

제3조(제도개선) ① 각 기관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·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(통신판매) 허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,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.

② 각 기관은 온라인 배송(통신판매) 외에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별 이해관계자(전상연 17개 각 지회, 수퍼마켓협동조합, 대형마트 등)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4조(상생방안) 각 기관은 제3조의 추진을 전제로 다음 각 항의 상생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다.

① **한국체인스토어협회**는 다음 각 호를 중소유통업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.

1.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지원 및 교육·연수, 대형마트 온·오프라인 입점 등 판로, 마케팅 개발 및 홍보 지원,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지원 등

2.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물류 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인력 지원, 노하우 전수, 공동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상품 및 구매 지원, 시설·장비 개선 지원 등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

② **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**는 다음 각 호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.
1. 제3조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과정의 적극적인 협조
2.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

③ **국무조정실,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**는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.
1.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예산의 지원
2. 제3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후속조치
3. 제5조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

제5조(상생협의체) ① 전국상인연합회,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제3조에 따른 제도개선 및 제4조에 따른 상생방안을 지속 협의 및 구체화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한다.

② 전국상인연합회,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석 및 변경)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들 간 해석이 다르거나,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, 서면 합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신의와 성실) 각 기관은 상호 협력과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
제8조(비밀보호) 각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교류되는 자료 및 정보를 각 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거나 언론 등 대외에 발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효력의 발생) 이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6부를 작성하고, 상호 기명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